

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전자우편(e-mail) :			
처분청				조사기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적습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심사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 배우자등 []			
첨부서류					수수료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없음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 청구)를 이용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청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